

March 24,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27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3. 16. ~ 3. 20.)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 주요 부처 추가경정예산” 및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실시

2020. 3. 13.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2020. 3. 16.부터 9. 15.까지 6개월간 ①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②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기존: 10 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 → 변경: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 ③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



[금융위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17. 지난 3. 5.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 부과, ② 분쟁조정 소송 관련한 소비자의 자료요구권 보장, ③ 투자상품 위험등급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화, ④ 금융상품 비교공시 법제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0. 3. 17. 가상자산과 관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 등 부과, ②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고객 사업자의 기본사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등 확인 의무 부과,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금융감독원예의 검사 권한 위탁 등이 있음

[\[참고자료\]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통과](#)



[고용부]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2020. 3. 16.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에 따라 9. 15.까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됨.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상승(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휴업 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 ③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 등이 있음

[참고자료]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과기부1] 연구개발특구 육성 가속화

2020. 3. 1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강소특구의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안건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 ①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추가, ② 내년 상반기 중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 ③ 김해, 진주, 포항, 창원, 안산,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추진 본격화, ④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적 재도약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추진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연구개발특구 육성 가속화



[과기부2]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20. 3. 17. 내년도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 기본방향이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DNA(Data, Network, AI), BIG 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분야 집중 지원, ② 품목별 맞춤형 R&D, 테스트베드 확충, 연구역량 결집을 위한 투자, ③ 4월 중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5월 중 국가연구실 국가연구시설 2단계 지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3회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기재부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0. 3. 17.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으로 '20년 한시적 확대, ②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③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 상향 등이 있음

[\[참고자료\] CV 대책 조특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기재부2]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2020. 3. 18.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함. 2020. 3.19. 부터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함에 따라,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예정임

[\[참고자료\]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



*2020년 주요 부처 추가경정예산 내용

부처	확정 금액	내용
기재부	11.7조원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 -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한 예산 0.15조원 증액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0.8조원 증액 등
고용부	1.28조원	-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0.2조원 증액 -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위해 예산 0.5조원 증액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위한 예산 0.05조원 증액 등
산자부	0.29조원	-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견 중소기업 지원 위한 예산 0.05조원 증액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위해 0.07조원 증액 - 코로나19 피해 지역 지원 위해 0.01조원 증액 등
금융위	0.81조원	- 대구 경북지역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총 0.7조원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위축 우려가 있는 기업 대상 P-CBO 발행 총 1.68조원 - 코로나19 직 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총 3.5조원 지원 등

***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분야	내용
항공	• 해외 입국제한(3.18. 기준 150개국),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 · 슬롯 회수를 전면유예('21년에도 운수권 · 슬롯 유지) • 비운항 증가에 따른 전국공항 주기장 최대한 확보 •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요청 등
전파 통신	•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 •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 무료 배송 • 특별재난지역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추진 등
버스	• 승객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 추가 감회 검토(3월말) • 시내 · 시외 · 마을버스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 독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최소 1개월 이상,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전환시까지) 등
관광	•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 500억원 추가 확대(500억원 → 1,000억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인력 증원 등 전달체계 개선 지속 추진 •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천억원 확대하여 업계 부담경감 지원(1,000억원 → 2,000억원) 등
공연	•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대해 1개소 당 최대 6천만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200개소) • 기초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공연규모 등에 따라 20~200백만원 차등지원 •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예매처별 1인당 8천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을 통해 위축된 수요 회복(300만명) 등
수출	• 외투기업 대상 실시간 정보제공(2.28), 분쟁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R&D 기술료 납부연장 •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 추가 지원(추경 500억원) • 수출성약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기존거래선관리, 인허가 취득지원, 법인설립지원 등
해운	• 항만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율 10% 확대 • 임대료 최대 100% 감면 •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당한 이익”의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중한 입증부담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등)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 02-316-1777

✉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